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7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오세희 · 장철민 · 박희승
허영 · 송재봉 · 김한규
김의겸 · 김재원 · 정진욱
차규근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회원의 자격 등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한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나아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지회(支會)”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하는 지회(支會)(이하 “광역지회”라 한다) 및 지부(支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광역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며, 광역지회의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회원의 자격 등) ①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단체 및 광역지회는 연합회의 정회원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3.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다만, 제24조제6항에 따른 광역지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경제 단체 및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법인·조합·단체 등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본다.

제3조(광역지회 및 지회·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연합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지회 및 지부는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회·지부 및 광역지회로 본다.

제4조(정관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합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제24조제5항·제6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회(支會)</u> 를 둘 수 있다.	⑤ ----- ----- ----- <u>특별시, 통합</u> <u>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u> <u>도, 특별자치도</u> 단위로 설치하 는 <u>지회(支會)(이하 “광역지회”</u> <u>라 한다)</u> 및 <u>지부(支部)</u> -----.
<신 설>	⑥ <u>광역지회는 각 지역을 대표</u> <u>하고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u> <u>가지며, 광역지회의 회장은 선</u> <u>거를 통하여 선출한다.</u>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4조의2(회원의 자격 등) ① 연 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u> <u>갖춘 법인·조합·단체 및 광</u> <u>역지회는 연합회의 정회원이</u> <u>된다.</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
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
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
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
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
체

2.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3.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
을 운영할 때는 「중소기업기
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
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
으로 보아 소상공인 요건 충
족 여부를 판단한다.

4.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

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다만, 제24조제6항에
따른 광역지회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경제단체 및 소상공인 등을 특
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
다.